

# 민고 계 그리고 왕토사상\*

金建泰\*\*

I. 서론	IV. 민고와 전세제도의 친연성
II. 민고전 조성과 분배	V. 결론
III. 마을의 민고전 운영	

## • 국문초록

조선후기에는 잡세 부과와 수취에 관련된 조직과 재원을 民庫라 했다. 지방 군현은 계를 활용해 민고를 운영했다. 군현에서 먼저 화포계, 망결계 등과 같이 개별 민고 이름을 딴 계를 설립하고, 戶數를 참작하여 계전[민고전]을 예하의 면에 분배하여 면 단위 계를 창설하도록 했다. 그리고 개별 면은 다시 그 계전을 예하의 동에 분배하고 동 단위 계를 창설하도록 했다. 그러면 동은 매년 분배금[원금]의 30~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세명목으로 면에 상납하고, 면은 그 돈을 모아 군현에 상납했다.

민고는 高利의 식리활동에 의거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웠다. 크고 작은 가뭄이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흉년이 든 해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농민들에게 민고전의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활발한 인구 이동도 장기간에 걸친 식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고전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야반도주하기가 일쑤였다. 짧은 평균수명도 장기간에 걸친 식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고전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逋欠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고만 재화를 분배하고 부세명목으로 그 이자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조선후기 환

\* 이 논문은 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호혜와 협동의 계보학 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 (AKSR2021-RC01).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곡 운영원리도 식리다. 재화를 나누어준 다음 이자를 부세명목으로 수취하는 제도는 왕토사상과 관련 있었다. 전결세는 왕의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양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민고와 환곡처럼 사용 [경작]하는 사람[戶]에게 전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즉 호수를 파악하면 결부수는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후기 호에 부과되는 세금[민고, 환곡]과 농지에 부과되는 세금[전결세]은 모두 왕의 물건을 활용한 사람들이 내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에는 戶稅와 田結稅를 거두기 위해 서는 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미리 나누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주제어 : 민고, 계, 식리, 포흠, 왕토사상

## I. 서론

조선후기에는 田政·軍政·還穀, 이른바 三政이 부세의 중심을 차지했다. 그런데 농민들은 이 삼정에 더하여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명목의 雜稅[雜役]도 부담했다. 이 잡세 부과와 수취에 관련된 조직[기구]과 재원을 民庫라 한다. 조선후기에는 조직과 재원을 모두 민고라 했지만 여기서는 조직을 민고, 재원을 民庫錢으로 구분해 사용하기로 한다. 민고는 지역 혹은 기능에 따라 補民庫, 大同庫, 防役庫, 鄕大同廳 등 그 명칭이 매우 다양했다. 그리고 한 지역에 여러 명목의 민고가 설치되었다. 19세기 중엽 공주에는 民役庫, 鑼役庫, 補役庫, 雇馬廳, 保民庫 등의 민고가 있었다. 한편 민고전은 대체로 存本取殖[식리]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함이 발생해 문서상의 액수와 실재하는 액수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졌다.<sup>1)</sup>

민고는 18세기 무렵에 설치되기 시작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늘어났고, 민고전 또한 그와 궤를 같이하며 증가했다. 그 같은 현상은 조선시대 재정정책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국가재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결세가 18~19세기 동안 적지 않게 감소했다. 즉 1744년 85만 4천여 결이던 출세실결수가 단기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줄어들어 1885년에는 77만 9천여 결에 그쳤다. 그 시기 1결당 전결세는 租 100두로 고정되어 있었다.<sup>2)</sup> 다음으로 균역법 이후~19세기 후반까지 균역자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1인의 균포값 또한 2냥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균포 수입은 명목가치[돈]로 계산하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실질가치[쌀]로 환산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즉 이 기간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적지 않게 올랐다.<sup>3)</sup> 이같이 18~19세기 동안 전결세와 균포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는 재정 부족분을 환곡과 민고전을 늘려 충당했던 것이다.

1) 김용섭, 「조선후기의 민고와 민고전」, 『동방학지』 23·2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0;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김덕진, 『조선후기 경제사연구』, 선인, 2002; 김현구, 「18·9세기 거제부의 해세운영과 민고」, 『부대사학』 부산대 사학회, 19, 2007; 송양섭, 「18~19세기 공주목의 재정구조와 민역청의 운영」, 『동방학지』 15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1.

2) 김건태, 「19세기 마을 공동납과 마을자치」, 『한국문화』 9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21.

3) 정승화, 「조선후기 균역청 재정 운영의 추이와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1.

기존 연구에서 민고와 관련된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다. 하지만 민고 운영의 구체적 실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가 중앙·지방관서 혹은 관료들이 작성한 문서에 의존하다 보니 민고전을 어떻게 분배하고 收捧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한 것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식리활동의 실상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포흠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지방관이나 이서배들의 부정부패를 꼽는다.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개인들이 착복했을까? 다시 말해 토지생산성이 불안정한 농업사회에서 장기간 식리를 하다 보면 포흠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기존 연구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고전을 분배받은 面中 혹은 洞中이 남긴 문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료는 면중이나 동중이 민고전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그 이자를 수취하는 실상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이같이 민고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피려면 부세를 부과했던 사람들(관료, 이서배)이 작성한 자료에 더하여 부세를 부담했던 주체들이 작성한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민고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전라도 장흥부 민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민고의 운영방식, 즉 存本取息[殖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정부는 왜 돈이나 곡물을 나누어 주고 난 다음 그 이자를 부세 명목으로 수취했을까? 다시 말해 왜 오늘날처럼 재정이 필요하면 새로운 규정을 만든 다음 세금을 곧바로 거두지 않았을까? 조선후기에는 민고만 존본취식의 형태로 운영된 것이 아니었다. 국가재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던 환곡도 존본취식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국왕의 토지를 인민이 빌려 경작한다’는 왕토사상에 근거하고 있던 전세제도 또한 따지고 보면 존본취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즉 본=토지, 식=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조선후기 결부 산정 원리를 해명하고, 나아가 조선후기 부세정책의 이념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 II. 민고전 구성과 분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장흥부 민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sup>4)</sup>

- I. 「長興府南面補民稷節目」
- II. 「南面補民稷迫節目」
- III. 「古邑面屈土鍊鏹救弊節目」
- IV. 「南面補稷節目」
- V. 「長興府各人等查徵錢出給各面救弊節目」

위 자료에서 보듯이 장흥에서는 민고를 稷라 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민고가 식리활동을 하던 기구였기 때문이다. 아래 정약용의 글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세속에서 돈을 거두어 殖利를 하면서 이름하여 稷라 한다. 稷라는 글자는 본디 없었는데, 「蘭亭帖」 우리나라 판본에서 稷를 稷로 잘못 쓴 것이 습속으로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는 무릇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면 모두 契라 한다. 同庚이면 甲稷라 하고, 同年이면 榜稷라 하고, 同官이면 僚稷라 한다. 홍문관에서는 稷屏을 만들고, 승문원에서는 稷帖을 작성하였는데, 이런 풍습이 서로 전해져 鄕村에서는 돈을 거두는 것 또한 모두 稷라 한다. 이와 같은 稷도 당연히 契라 부른다. 契는 約束이자 會습이다.<sup>5)</sup>

위에서 보듯이 식리를 하면 稷[契]가 되는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稷, 契, 契가 모두

---

4) 장흥부 민고 관련 자료는 교원대학교 이용기 교수가 수집한 것이다. 애써 수집한 자료를 흔쾌히 제공해준 이 교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일부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에 소개된 것이다. <http://archive.history.go.kr/>

5) 『與猶堂全書』, 「雜纂集」, 「雅言覺非」, “今俗釀錢殖利, 名之曰稷. 稷本無字, 唯「蘭亭帖」坊本稷訛作稷 因以襲之也. …… 東人凡與衆會飲, 皆謂之稷. 同庚曰甲稷, 同年曰榜稷, 同官曰僚稷. 玉堂修稷屏, 槐院裝稷帖, 此風相傳, 鄕村釀錢者, 亦皆名稷耳. 此等之稷, 當名曰契, 契者, 約也合也.” 심재우,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향약·계 이해와 향촌자치 구상」, 『조선시대의 계와 향촌사회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집, 2022. 9. 30)에서 재인용.

〈표 1〉 19세기 장흥·강진지역 민고전 운영 실상

자료 내용	I-1	I-2	II	III	IV	V
설립	1831년 9월	1831년 9월	1845년 5월	1845년 8월	1846년 12월	1847년 9월
조성자	巡察使	巡察使	長興府使	長興府使	長興府使	御使
원금 출처	所徵錢	營門查徵錢		分排餘錢	救弊稷·添補稷·今補稷錢 1,635.94냥의 6개월 이자	巡營主人 및 吏鄕의 犯科偷弄錢
조성액	1,118.75냥	1,033.2냥	300냥	100냥	294.47냥	1,600냥
관리 방식	面契	面契	面契	面契	面契	面契
분배 대상		17面 6,747호			16面 5,866호(추정)	17面 4,610호
분배액		호당 0.153냥			호당 0.05냥	
이자율	年 30%	年 60%	年 60%	年 50%	年 36%	
강신일		2월 1일, 8월 1일	2월 1일, 8월 1일		6월, 12월	
기타		원금이 2,000냥 되면 그때부터 이자 활용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한 마을에서 작성된 문서에서 稷, 稷, 契가 혼용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장흥부 자료 5종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현존하는 자료로 미루어 보건대, 19세기 장흥에서도 여타 지역처럼 새로운 명목의 민고가 지속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타지역처럼 기존의 민고가 잘 운영되지 못하면 기금을 더 보태기도 했다.<sup>6)</sup> 민고 조성자의 성격은 다양했다. 수령뿐만 아니라

6) 「南面補民稷追節目」, “本邑補民稷, 當初勅設, 寔爲其揀時弊端, 民力之地, 而行之未幾年, 名存而實無, 稷錢殆同龜毛而無餘, 民瘼轉至蝸集而莫救, 全無設稷之本意, 良覺寒心官莅任三載, 邑弊民瘼百不揀一, 而遽當遞等, 實多歉愧. 今此三百兩錢, 不足當一隅, 而庶幾補萬一故出付補民稷, 臚刊諸條于左, 毋或違越, 永久遵行者.”

순찰사, 병사, 어사 등도 민고를 만들었다. 민고를 새로 조성할 때 여러 곳의 돈을 가져와 민고전을 삼기도 했다.<sup>7)</sup> 그리고 기존 민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명목의 민고를 설립하기도 하고,<sup>8)</sup> 한번 마련한 재원으로 여러 명목의 민고를 설치하기도 했다.<sup>9)</sup> 개별 민고의 민고전 액수는 큰 편차가 있었다.

장흥에서는 민고를 운영할 때 면단위 계, 즉 面契를 활용했다. 그런데 모든 민고가 면계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강진에 자리한 修仁山城修補 관련 민고는 동단위 계, 즉 洞契를 활용했다.<sup>10)</sup> 한편 민고전을 분배할 때 모든 면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일부 면을 제외하기도 했다. 장흥부는 개별 면의 戶數를 참작하여 민고전을 분배했는데, 민고전 분배 대상 호는 민고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했다. 예컨대, 1831년 9월에는 17면 6,747호, 1847년 9월에는 4,610호를 대상으로 삼았다. 만약 모든 호를 대상으로 했다면 장흥부의 호수가 16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개별 민고에 따라 민고전 액수가 다르고, 분배대상 호수가 차이났기 때문에 개별 호에 분배되는 민고전 액수 또한 민고에 따라 상이했다. 게다가 민고에 따라 이자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위에 소개한 5개 자료의 명칭에 모두 ‘節目’이 들어간 데서 알 수 있듯이 민고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 그 가운데 1831년 9월에 작성된 「長興府南面補民稷節目」의 내용이 아래에서 보듯이 매우 구체적이다.

① 一. 講信日是 매년 2월 초 1일로 한다. 이자율을 연 30%로 하여 2,000냥이 된 후에 당해 연도 이자를 떼어내서 민인의 公役을 돕도록 하되, 먼저 營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강신 후 稷錢을 받아들이고 나누어주는 문서 3건을 別有司로 하여금 가지고 와 보고하도록 한다. 한 부를 官에 올리고, 한 부를 面에 올리고, 한 부를 營門에 보고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것을)

7) 補民稷錢(I-1)은 本邑竹木物情費加斂錢查出條, 左水營色吏處情費錢查出條, 祭需代錢加分錄查出條, 邸吏金弘瑞進上撤封價冒減條 등의 돈이다.

8) 1846년 12월 장흥부사는 기존의 救弊稷錢과 添補稷錢, 그리고 1846년 마련한 今補稷錢 등의 이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補稷(IV)를 설립했다.

9) 「南面補稷節目」에 따르면 1846년 12월 장흥부사는 今補稷錢 중의 일부를 떼어내서 三處橋梁稷, 掘土及鍊鏃稷, 進上節扇價稷 등을 만들었다.

10) (庚午 九月 日) 「修仁山城修補錢分派節目」, “茲庸別備錢一千兩, 稱城計丁, 分排各里, 俾作洞契, 以爲隨毀隨補之資, 蓋此錢非凡他殖利之比也.”

오랫동안 시행할 것.

㉞ 一. 講信日에 후 稷錢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즉시 관에 보고하여 엄히 다스린 후 받아들인다. 別有司 가운데 만약 사망한 자가 있으면 해당 面 執綱이 勤幹하고 富實한 사람을 擇定하여 보고하고 대신하도록 할 것.

㉟ 一. 殖利하는 동안 만약 나누어준 것과 관련해 違錯의 단서가 발견되면 해당 有司를 특별히 엄하게 다스릴 것.

㊱ 一. 稷錢을 받아들일 때 有司가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어 本錢과 利子를 받아들이지 않고 문서상 받아들였다가 (그 돈을 그에게 다시-인용자) 나누어준 것으로 처리하려 하거든 面 執綱이 즉시 보고하고 엄히 다스려서 받아들일 것.

㊲ 一. 稷錢을 나누어줄 때 吏鄉輩가 有司에게 끈을 대어 후 불법으로 받았다가 드러나면 齮門에 보고하고 刑配할 것.

㊳ 一. 各面 面稷 文書 照檢과 관련된 것은 戶房 色吏가 처리할 것.<sup>11)</sup>

위 절목은 민고전 규모, 문서관리, 유사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절목 중 ㉞ 항목은 비교적 잘 지켜진 듯하다. 1831년 9월 齮門查徵錢을 17개 면에 분배하고 面契를 구성하도록 하자, 각 면은 별유사 3명을 선정하여 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 때 선정된 별유사 직역을 보면 유학 33명, 양인 11명, 한량 4명, 장관 3명이다. 이처럼 유학이 가장 많지만 여타 직역을 가진 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별유사는 한자해독 능력이 있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절목 가운데 ㉟ 항목은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하다. 장흥부 古上面에서 1871년 8월 작성한 「火炮契錢成冊」, 1886년 1월 작성한 「火炮契錢成冊」, 1886년 7월 작성한 「火炮錢捧上冊」을 통해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1871년 문서는 고상면 22개 동에 43.84냥(0.16냥\*274호)을 분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고상면은 각 동의 戶數를

11) 「長興府南面補民稷節目」.

〈표 2〉 장흥부 고읍면 화포계전 운영 실상 (단위: 냥, 명)

년	월	수 봉 분 배	분배금 수봉				분배금 미수봉					합		
			①		②		③		④		⑤			
			이자 유사	완봉 전	이자 유사	완봉 전	이자 유사	완봉 전	이자 유사	부분 봉 전	이자 유사	미봉 전	호, 인	전
1871	8	분배											274호	43.84
	1	분배											22명	119.2
1886	7	이자	1	0.2			13	17.92	2	0.96 (0.8)	6	4.81	22명	23.89
	7	분배											21명	123.17
1887	1	이자	2	3.42	4	5.02	4	4.72	2	4.46 (4)	9	7.07	21명	24.69

비고: (괄호) 안은 수봉한 액수

근거로 분배할 화포전을 산정했다. 1886년 1월에 처음 작성된 문서는 19개 동의 유사 22명에게 119.2냥을 분배할 때 작성한 자료인데, 거기에는 그해 7월 6개월 치 이자 수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정보도 담겨있다. 1886년 7월에 처음 작성된 문서는 19개 동 유사 22명에게 123.17냥을 분배할 때 작성한 자료인데, 거기에도 1887년 1월 6개월 치 이자 수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정보가 담겨있다.

문서상 고읍면 화포계의 분배금[원금]이 15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그런데 1886년에 작성된 두 문서를 살펴보면 분배금의 상당량이 허수[逋欠]임을 알 수 있다. 즉 이자를 받지 못해 분배금과 이자를 합친 돈을 분배한 사례가 적지 않다. 고읍면은 화포계전 수봉 여부를 꺾쇠로 표시했는데, 수봉한 곳에는 꺾쇠를 쳤고, 미수봉한 곳에는 꺾쇠를 치지 않았다. 장흥·강진지역 각종 계는 이자 수봉 여부를 통상 꺾쇠로 처리했다. 고읍면 화포계의 분배금·이자수봉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배금 수봉

- ① 전액 周岐學 1월 分1兩 利2錢 → 7월 분배 대상에서 제외
- ② 일부 李成行 → 7월 分9兩 內2兩入 利1兩8錢

분배금 미수봉 사례의 이자 수봉 실상

- ③ 완봉 金友達 1월 分2兩 利5錢8分 → 7월 分2兩 利5錢8分
- ④ 일부 봉 金圭玄 1월 分1兩2錢 利2錢4分 內2錢入 → 7월 分1兩2錢4分 利2錢5分
- ⑤ 미봉 嚴春甲 1월 分1兩9錢2分 利3錢9分 → 7월 分2兩3錢1分 利4錢7分

사례 ①은 1월에 계전을 분배하고, 7월에 분배금과 6개월 치 이자를 수봉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표 2〉 참조). 사례 ②는 7월에 계전을 분배하고 1887년 1월에 분배금 일부와 6개월 치 이자를 수봉한 사례다. 이러한 사례 또한 얼마 되지 않는다. 이같이 고읍면은 대부분의 분배금을 받지 않았다. 19세기 장흥·강진 지역의 각종 계는 대체로 분배금[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그 이자만 정산했다. 그래서 장흥부 子美洞에서는 洞契 분배금을 ‘坐錢’,<sup>12)</sup> 즉 ‘눌러 앉혀 놓은 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례 ③은 이자를 모두 받아들인 사례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줄어든다. ④는 이자 일부만 수봉한 사례로,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⑤는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사례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가 늘어난다.

④·⑤의 경우 분배금에 받지 못한 이자를 합해 다시 분배된다. 1886년 7월 유사 6명은 분배금(23.92냥)과 이자(4.81냥)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1887년 1월 유사 9명은 분배금(35.16냥)과 이자(7.07냥)를 한 푼도 상납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서로만 나누어주고 받아들인 액수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 그 경우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逋欠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面은 미납된 이자를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1867년 제정된 아래 장흥부 古邑面契 節目은 당시의 실상을 잘 전한다.

一. 면계를 설립한 의도는 비단 식리를 하여 금전을 늘리려는 것뿐만 아니라, 풍속을 바르게 하고 인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각 마을에 만약 풍속을 해치는 일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생긴다면 面會 때 각별하게 징벌한다. 죄를 저지른 마을은 간혹 배척하면 되지만,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사롭게 처단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관아에 알려져 바로잡을 일이다.

12) 『洞中大同契冊』, 壬戌 十一月 十五日 講信時 已上坐錢并本利 所捧合錢33兩6錢.

一. 講會를 열어 (계전을-인용자) 수봉하는 날 각 마을 錢有司가 만약 기일을 어기고 봉납하지 않거나, 또 간혹 이유 없이 불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유사 문책과 처벌은 잠시 놔두고, 그 마을에서 거두지 못한 돈과 물품을 기한을 새로 정하여 징수할 일이다.<sup>13)</sup>

위에서 보듯이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죄지는 사람을 자체적으로 징벌하지 못하고 관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마을 전유사가 계전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다.

### Ⅲ. 마을의 민고전 운영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장흥부에서 면 단위로 민고전을 분배하면, 면에서는 面契를 창설한 다음 그 돈을 다시 동 단위로 분배했다. 여기서는 장흥부 자미동 사례를 통해 마을의 민고전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에는 마을을 뜻하는 용어로 洞, 里를 혼용했지만 여기서는 그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 사용하고자 한다. 리는 여러 개의 洞을 아우르는 행정 마을, 洞은 자연 마을[자연촌]을 의미한다.

자미동은 민고전 운영과 관련된 사실을 『洞中大同禮冊』에 비교적 소상하게 남겨놓았다. 자미동은 민고전에 따라 별도의 계를 창설하여 관리하기도 하고, 동계에 통합시켜 관리하기도 했다. 별도의 계를 만들 경우 傳掌記[회계장부]도 따로 작성했다. 현존하는 『동중대동계책』은 1857년부터 시작하는데, 앞 부분은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개별 계의 전장기를 모아 책으로 묶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대가 뒤엎힌 경우가 있다.<sup>14)</sup> 그래서 『동중대동계책』의 구성은 다소 복잡하고, 그 내용은 매우 산만하다(〈표 3〉 참조). 이는 자미동의 민고전 관련 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표 3〉에 표시된 식별 부호를 간단히 설명하면

13) 『古邑面契案』.

14) 예컨대, '신미(1871) 8월 일 화포전' 관련 기록 다음에 '정묘(1867) 정월 일 面會 분배전 立契記'가 나온다. 그리고 '경오(1870) 면회 分排錢記' 다음에 '갑자(1864) 12월 일 補民契錢' 관련 내용이 뒤따른다.

다음과 같다.

〈표 3〉 1857~1907년 자미동 『동중대동계책』 계 관련 기록 현황

계	년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70	71	72	~	80	81	
	民 庫	㉠ 大巖峙修道錢	▲					▲												
㉡ 節扇禊錢		▲					▲													
㉢ 驅馬禊錢		▲					▲													
㉣ 掘土禊錢		▲					▲													
㉤ 補民禊錢		▲		▲	▲				▲			▲		▲					●	
㉥ 軍器錢		▲																		
㉦ 丁(賣番價在)錢		▲																		
㉧ 順卜丁錢		▲		▲				▲	▲	●										
㉨ 順龍丁錢		▲	▲	▲				▲	▲	●										
㉩ 戶債				▲																
㉪ 雇契錢										●		▲		▲					▲	
㉫ 火砲錢															▲				●	
㉬ 繡依契錢																▲				
㉭ 社庫 放賣錢																				
㉮ 橋梁禊																				
㉯ 繡衣橋梁抹弊錢																				
㉺ 松禊錢																				
洞禊				○			○	○	○	○	○	○	○	○					○	○

- ▲ 개별 민고[계] 전장기가 존재하는 해.
- 민고가 동계에 통합된 해.
- 동계 전장기에서 민고 관련 기록이 나오는 해.
- 동계 전장기가 작성된 해.

민고 계 그리고 왕토사상

계	년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01	~	07
		民庫	○	○	○	○	○	○	○	○	○	○	○	○	○	○	○	○	○
① 大巖時修道錢																			
② 節扇禊錢																			
③ 驅馬禊錢																			
④ 掘土禊錢																			
⑤ 補民禊錢						▲													
⑥ 軍器錢																			
⑦ 丁(賣番價在)錢																			
⑧ 順卜丁錢																			
⑨ 順龍丁錢																			
⑩ 戶債																			
⑪ 雇契錢																			
⑫ 火炮錢		●				●					●				▲				
⑬ 繡依契錢																			
⑭ 社庫 放賣錢						▲	▲	▲	▲	▲	◎								
⑮ 橋梁禊				▲	▲														◎
⑯ 繡衣橋梁抹弊錢					▲	▲													
⑰ 松禊錢											▲	▲	▲	▲					◎
洞禊		○	○	○	○	○	○	○	○	○	○	○	○	○	○	○	○	○	○

『동중대동계책』에는 17종의 민고전이 등장한다. 개별 전장기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독립된 계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민고전이 분배되면 자미동은 초기에는 대체로 계를 조성하여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동계에 통합시킨 듯하다(⑧, ⑨, ⑩, ⑫, ⑮, ⑰). 한편 어떤 민고전은 동계에서 관련 기록이 먼저 나온 뒤 해당 전장기가 작성되기도 하고(⑫), 동계에 통합된 다음에 전장기가 다시 작성되기도 했다(⑩). 이러한 현상은 同名의 민고전이 여러 번 분배되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앞의 장흥부 자료에서 보았듯이 동명의 민고전이 연도를 달리하여 분배되기도 했다.

자미동 민고 관련 계의 운영실상은 順卜丁錢(⑧), 順龍丁錢(⑨) 전장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자미동은 순복과 순릉 정전의 유래를 밝혀두지 않았으나 『동중대동계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돈은 장흥부에서 속오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미동에 분배한 민고전인 것으로 보인다. ‘순복정전’의 명칭이 1865년부터 ‘別隊坐錢’으로 바뀐 데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 정전은 순복과 순룡이 1857년 속오군에 차정된 것과 관련 있었던 것이다. 이같이 장흥부는 軍器 마련과 관련된 민고전을 마을에 분배하기도 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1871년에는 화포군 관련 민고전을 자미동에 나누어 주기도 했다.

安成允 砲價 10兩, 閑刀 1兩, 戰笠 4隻, 服色 3兩  
申萬卜 砲 12兩5錢 洞中 當措備<sup>16)</sup>

위에서 보듯이 장흥부는 화포군 안성윤의 軍器 비용만 지원하고, 신만복의 군기 비용은 자미동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자미동은 順卜·順龍丁錢을 존본취식 방식, 즉 계로 운영했다. 따라서 편의상 순복정전을 순복계, 순룡정전을 순룡계로 칭하기로 한다. 두 계의 수입은 기금을 제외하면 모두 이자였다.<sup>17)</sup> 수입과 달리 지출 양상은 자못 상이하다. 순복계는 속오군 관련 지출이 없는 가운데 洞用이 전체 82.8%를 차지한다.<sup>18)</sup> 계전을 동중으로 이전하면 동중에서 순복계 관련 부세를 납부한 듯하다. 순복계와 달리 순룡계 지출 대부분은 속오군 관련 부세였는데, 지출의 83.7%가 丁[番]錢이었다.<sup>19)</sup>

문서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契錢은 증가했지만 사실 두 계는 순조롭게 운용되지 못했다(〈표 4〉 참조). 먼저 표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둔다. 분배금은 한 해 수입에서 지출을 제하고 남은 돈을 전유사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이자는 직전 연도 갹신 때 나누어준 분배금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1858년 7월 20일 순룡정전 이자 3.6냥은 1857년 11월 15일에 분배한 돈에 대한 것이다. 1860·1865년은 전장기가

15) 『洞中大同稟冊』 甲子(1864), 已上 別隊坐錢 40兩 并利所奉合錢 52兩.

16) 『洞中大同稟冊』 辛未(1871).

17) 이자 수입은 순복계 52.7兩, 순룡계 23.4兩.

18) 洞用 34.8兩(1兩 香徒稟錢補給, 3兩 書契錢補入, 3錢4分 還錢不足入, 3兩7錢 春等雇錢入, 11兩7錢 舊公司員債報, 12兩 洞中雜費除), 기타 7.22兩.

19) 속오군 관련 10.1냥(己未 2月 1日 2兩4分 丁錢下, 己未 7月 1日 2兩2分 番錢下, 癸亥 2月 1日 番錢 2兩4分下, 癸亥 2月 1日 1兩9錢6分 公司員處先給, 甲子 2月 1日 番錢 2兩4分除), 기타 1.96兩.

〈표 4〉 장흥부 자미동 민고전[丁錢] 운영 실상

(단위: 냥, 명)

시기		계		순복계			순롱계		
		강신 일	이자	이자율	분배	전유사	이자	이자율	분배
연도	강신 일	이자	이자율	분배	전유사	이자	이자율	분배	전유사
1857	11/15			10(9+1)	6			18	12
1858	7/20	(3.6)	40%	(13.6)		3.6	20%	19	13
1859	2/1	(5.44)	40%	19.04	16	3.8	20%	20	15
	7/20					4	20%	20	15
1860	2/1	7.61	40%			4	20%		
1862	2/1			40	불명			20	불명
1863	2/1	12	30%	40	25	4	20%	20	13
1864	2/1	12	30%	40	25	4	20%	20	12
1865	2/1	12	30%	39	24	4	20%		

비고: 음영 부분은 추정한 것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 전장기에 두 해 이자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해의 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횃 운영 실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1857~1859년 사이 순복계의 문서정리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1857년 11월 15일에 정전 10냥을 분배하면서 이자율이 40%임을 분명히 해 두었는데, 1859년 2월 1일 정전의 本錢과 이자 합이 19.04냥이 되었다.<sup>20)</sup> 이같이 자미동은 1858년 정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전 10냥이 15개월 만에 19.04냥이 되었다고 기록해 두었다.<sup>21)</sup> 실제로 연리 80%에

20) 『洞中大同稷冊』 己未(1859) 2月 初 1日, 順卜丁錢并本利 19兩4分.

21) 1858년 정전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추론이 불가피하다. 1857년 자미동은 장흥부에서 받은 순복정전민고전 9냥에 洞錢 1냥을 더하여 10냥을 전유사 6명에게 분배하고 민고전 9냥에 대해서는 40% 이자를 받고, 동전에서 가져온 1냥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1858년 언젠가 분배금 10냥과 9냥에 대한 이자 3.6냥, 도합 13.6냥을 수합했다. 1857년 동계책을 보면 9냥의 이자 3.6냥에 대해 꺾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는 이자를 수봉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13.6냥에 40% 이자 5.44냥을 더하면 1859년 2월 1일 전유사에게 분배한 19.04냥이 된다.

육박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까? 실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10냥이 19.04냥이 되는 과정을 남길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그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순룡계와 같이 1858년 기록을 자세히 남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룡계 관련 기록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자미동은 1857년 11월 15일 순복·순룡정전을 전유사들에게 분배한 다음 강신을 매년 2월 초 1일과 7월 20일, 두 차례 갖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순복계는 초기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순룡계는 초기에는 합의 사항을 잘 지키다가 1863년부터 강신을 1회만 가졌다. 1863년 2월 1일 자미동은 순룡정전 20냥을 13명에게 분배하고, 1864년 2월 1일 강신을 가졌다. 그런데 1863년과 1864년 기록을 대조해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1863년 문서를 보면 돈을 분배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분배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혀놓았다.<sup>22)</sup> 이같이 1863년 순룡정전 전장기에는 이자를 두 번 수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1864년 강신 기록을 보면 이자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sup>23)</sup> 즉 이자 4냥이 문서에서 사라진 것이다.

두 계의 강신은 1865년 2월 1일을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즉 계가 해체된 것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1865년 3월 8일 두 계의 기금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을축(1865) 3월 초 8일. 逃亡別隊 金順卜의 役을 官의 分付에 따라 移錄했다. 立旨 時에 馬匹과 機機 값을 갖추어 납부하기 위해, 洞中의 여러 契錢을 털어내어 갚았다. 洞契錢에서 남은 18냥 8전과 雇契錢 10냥, 합 28냥 8전을 여러 有司에게 分排한다.<sup>24)</sup>

위에서 보듯이 자미동은 여러 종류의 契錢을 모아 김순복이 관에서 받은 말과

22) 1863년 2월 1일 강신 때 20냥을 13명에게 분배하고 그 이후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두 번 수취한 것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夫山宅 6兩 利1兩2錢[격쇠] 利1兩2錢[격쇠] 형식이다.

23) 『洞中大同稜冊』 甲子(1864) 2月 初1日, 順龍丁錢講信時 已上坐錢 20兩 并利所封合錢 24兩. 1864년 받아들인 액수는 전해 분배금과 그 이자 4냥(연리 20%)뿐이다.

24) 『洞中大同稜冊』, 乙丑(1865) 3月 初八日 逃亡別隊 金順卜之役 依官分付移錄 立旨時 馬匹機械 價 準納次 洞中各契錢減數推報 洞契錢餘在拾捌兩捌錢果 雇契錢拾兩 合錢貳拾捌兩捌錢 各有司分排印.

군기 값을 변상했는데, 이 때 순복·순룡정전을 관리하던 계가 해체된 것이다.

그런데 장흥·강진지역 각종 계의 전장기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서술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즉 관에 납부한 돈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전장기 작성 목적이 금전출납 현황을 정확하게 밝혀두는 데 있는 만큼 지출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는 간혹 있으나, 금전출납 액수를 정확히 기재해 두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자미동 동중에서 관리하던 순복·순룡정전의 실제 액수와 전장기상의 액수가 상이했기 때문에 김순복과 관련된 마필과 기물값을 변상할 때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전장기와 실제가 상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액수를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자미동의 민고전은 순조롭게 운영되지 못했다. 1881년 12월 10일 자미동은 동계, 民庫契, 火炮契를 합계하였는데, 그때 3개 계의 전장기상의 계전은 도합 42.56냥이었다. 그런데 이 계전 가운데는 포함된 것이 많았다. 합계 직후 洞中은 계전을 점검하였는데, 당시 식리활동이 가능한 돈은 23.84냥에 불과했다. 이렇듯 합계 직전 포함량이 대략 50%에 달했다.<sup>25)</sup>

민고전과 관련된 마을 단위의 계가 매끄럽게 운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장흥부 傍村洞 『大同契』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에는 1838년 창설된 동계, 1863년부터 시작하는 官下軍錢(이하 軍契로 칭함), 1864년 설립된 亡結錢(이하 망결계<sup>26)</sup>로 칭함) 등을 비롯한 각종 계의 전장기가 들어있다. 방촌동은 계별로 전장기를 따로 작성해 오다가 임신(1872)년 12월 『大同契』로 묶고 난 다음부터 여러 계의 금전출납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그곳에 정리했다. 그 중 군계와 망결계가 장흥부 민고와 관련된 계다.

방촌동은 장흥부가 속오군 관련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민고전을 분배하자 군계를 설립한 듯하다. 군계는 앞에서 살펴본 자미동 순복·순룡정전 관련 계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亡結錢은 방촌동에서 마련한 돈인데, 基金에 망결전[陳田結

25) 『洞中大同契冊』 辛巳(1881) 12월 10日, 三契合本錢 30兩5錢6分 并本利所捧合錢 42兩5錢6分 二具 追入錢1兩入 都合錢 43兩5錢6分內 5錢8分 長水處未捧 2錢 當日費 壬午(1882) 錢有司 …… 右14兩 洞錢 …… 右3兩 民庫錢 …… 右6兩8錢4分 火炮錢.

26) 장흥에서는 망결전을 관리하던 계를 망결계로 불렀다. 모산동 『洞中年下記』, 庚午(1870) 3월 13日 亡結契 留置錢 3兩1錢, 壬申(1871) 11월 20日 3兩7錢4分 亡結錢下.

〈표 5〉 장흥부 방촌동 각종 계의 이자 수봉 현황 (단위: 냥, 명)

연도	계	亡結契				軍契				洞契				탕감
		수봉	미봉	합	유사	수봉	미봉	합	유사	수봉	미봉	합	유사	
1864	분배	15		15	9	7		7	5		정리	생략		
1865	이자	6		6		2.8		2.8						
	분배			21.11	14			9.8	6		정리	생략		
1866	이자	5.1	3.36	8.46		3.12	0.8	3.92						
	분배			26.31	20			11.2	8		정리	생략		
1867	이자	7.44	3.06	10.5		2.56	1.92	4.48						
	분배			32.2	20			12.19	7			32.54	2	
1868	이자	7.44	5.3	12.74		2.36	2.48	4.84			13	13		45.54
	분배			39.04	20			14.68	7	0	0	0	0	
1869	이자	4.88	10.58	15.46		2.6	3.36	5.8						
	분배	원금	이자	동계	이전			18.11	7			44.3	17	
1870	이자					4.32	2.88	7.2		2	15.6	17.6		24.99
	수봉					원금	이자	동계	이전			62.22		
	분배			6	불명							31.22	7	11.83
1871	이자	2.4		2.4						2	11.44	13.44		12.76
	분배			8.14	불명							23.76	3	
1872	이자	0		0							9.48	9.48		33.24
	분배			8.14	2							0		
1873	이자	3.24		3.24										
	분배			9.21	5							0		
1874	이자	0		0										
	분배			9.21								0		
1875	이자	1.96	1.68	3.64										
	분배			10.82								0		
1876	이자	1.96	2.36	4.32										
	분배			19.9								0		
1877	이자	원금	이자	동계	이전									6.11
	수봉											27.9		

비고: 전장기는 분배금과 이자 수봉에 약간의 계산 착오가 있음. 분배기 기재 내용대로 정리하였음.

稅)을 납부하기 위해 마련한 돈도 포함되어 있다.<sup>27)</sup> 장흥부 모산동에서도 전결세를 납부하기 위해 마련한 돈을 기금으로 삼아서 1844년 망결계를 설립했다.<sup>28)</sup> 아마 장흥부는 각 동에 망결계 설립을 독려하면서 전결세 일부를 감면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망결전 또한 장흥부에서 나누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망결계도 민고와 관련된 계다.

방촌동은 군계와 망결계를 존본취식 방식으로 운영했다. 두 계의 수입은 기금을 제외하면 모두 이자였다.<sup>29)</sup> 수입과 달리 지출 양상은 자못 상이하다. 군계 지출 내역을 보면 속오군 관련이 37.2%, 洞用이 48.8%, 塲값이 14%를 차지한다.<sup>30)</sup> 속오군 관련 지출과 동용이 연도를 달리하는 것을 볼 때 양자의 성격은 동일했다고 판단된다. 즉 속오군 관련 지출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망결계 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보면 망결세 13.2%, 동용 84.2%, 塲값 2.6%다.<sup>31)</sup> 망결세와 동용이 연도를 달리하는 것을 볼 때 동용 중에는 망결세와 관련된 돈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문서상 방촌동 민고 관련 契錢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했지만 그 가운데는 虛數가 많았다(〈표 5〉 참조). 먼저 망결계 운영을 살펴보자. 1864년 12월 15일 전유사 9명에게 망결전을 나누어주고, 1865년 12월 15일 분배금과 이자를 모두 수봉했다. 그런데 1866년부터 받지 못한 이자가 발생했고, 그 액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났다. 망결계는 1868년 전유사에게 계전을 분배하고 나서 1869년 동계에 통합되었다.<sup>32)</sup> 다음으로 군계 운영을 살펴보자. 1864년 분배한 계전의 분배금과 이자는 1865년에 모두 수봉되었다. 그런데 군계도 망결계처럼 1866년부터 받지 못한 이자가

27) 『大同禊』 癸亥(1863), 元城灰場時 4兩6錢 分定記; 癸亥(1863) 12월 15日, 已上 本錢 4兩6錢 并利 合 6兩4錢4分; 甲子(1864) 12월 15日, 亡結錢 6兩4錢4分 并利 9兩 又 2兩 永牙灰場價 合11兩 又 4兩 已奉亡結條入 實15兩分定.

28) 모산동 『亡結契傳掌記』 甲辰(1844) 2月 日, 月今所耕防錢 1兩.

29) 이자 수입은 망결계 53.16兩, 군계 29.04兩.

30) 속오군 관련 3.1兩(丙寅 12월 15日 1兩5錢 舊未報下, 己巳 12월 15日 1兩6錢 東伍條下), 洞用 4.88兩(乙丑 12월 15日 1兩7分 洞下除, 丁卯 12월 15日 3兩 洞中下記下), 기타 1.4兩(丁卯 12월 15日 3錢7分 亡結去, 己巳 12월 15日 9錢 去年未入條下).

31) 망결세 1.87兩(丙寅 12월 15日 1兩8錢7分 回頭除. 19세기 장흥에서는 망결세를 회두라고도 했다.) 동용 84.15兩(丙寅 12월 15日 又1兩 洞下, 丁卯 12월 15日 5兩 洞中下記下, 戊辰 12월 15日 5兩9錢 講信下).

32) 『大同禊』 「洞契」 己巳(1869) 12월 15日, 已上 亡結本錢 39兩6分 并利 54兩6錢8分.

발생했고, 그 액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났다. 한편 방촌동 『大同禊』는 1869년 군계전을 분배하고, 1870년 그 이자를 수합한 내용까지만 담고 있고, 그 이후 군계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은 전혀 없다. 하지만 『大同禊』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계가 1870년 동계에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망결계와 군계가 동계에 통합된 이후 두 계에서 관리하던 계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동계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동계는 1838년 창설된 후 1841년까지는 동계전의 분배와 수봉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842~1863년까지 동계 문서가 유실되어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지만 1865년 분배금과 이자를 합한 돈이 전유사에게 분배된 사례가 2건 확인된다.<sup>34)</sup> 그리고 1865년 이후에는 오직 두 사람에게만 계전(분배금과 이자의 합)이 분배된다. 그 결과가 <표 5>의 1867년 내용이다. 한편 동계는 1868년에는 계전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45.54냥)을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슬그머니 탕감했음을 알 수 있다(음영 부분). 이같이 동계의 현금 재정이 바닥났기 때문에 1869년 동중은 망결계를 동계에 합병시켰고, 1년 뒤 군계마저 동계에 통합시켰던 것이다.

동계는 1870년 군계를 흡수하면서 망결계와 군계에서 오랫동안 받지 못했던 이자 상당 부분을 슬그머니, 즉 전장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탕감했다(음영 부분).<sup>35)</sup> 이후

33) 1869년 「洞契」 전유사 위문조 분배전 3.8냥 리 1.52냥 ; 1869년 「官下軍錢」 전유사 위문조 분배전 2.72냥 리 1.08냥, 위채기 분배전 4.52냥 리 1.83냥 ; 1870년 「洞契」 위문조 분배전 9.12냥 리 3.64냥, 위채기 분배전 6.32냥 리 3.52냥. 1869년 위문조에게 분배된 동계전과 관하군전의 분배금과 이자를 합하면 1870년 위문조에게 분배된 동계전 분배금이 된다. 그리고 1869년 위채기에게 분배된 관하군전의 분배금과 이자를 합하면 1870년 위채기에게 분배된 동계전 분배금이 된다.

34) 『大同禊』 「洞契」 甲子(1864) 12月 15日. 이 해 7명에게 계전이 분배되었는데, 그 중 5명에게는 분배금과 이자 부분에 꺾쇠가 쳐져 있고, 2명에게는 꺾쇠가 없다. 그 두 명의 1865년 분배금은 1864년 분배금과 이자를 합한 액수다.

35)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군계 전장기는 1869년 분배금의 이자를 1870년에 수봉했음을 밝혀놓았다. 그리고 1869년 동계 전장기는 44.3냥을 분배하고, 그 이자가 17.6냥(연리 40%를 적용하면 44.3냥의 이자는 17.72냥이다.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이자를 줄여주었는지 알 수 없다)임을 분명히 해 두었다. 그런데 1870년 동계 전장기는 분배금 44.3냥과 이자 17.92냥을 수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두 전장기 이자를 보면 0.32냥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 동계가 1870년 군계를 합병하면서 망결계와 군계 시절부터 누적되어온 미수금과 그 이자 중 24.99냥을 슬그머니(음영 부분), 즉 전장기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탕감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했

동계는 1872년까지 3차에 걸쳐 망결계와 군계 때부터 누적되어온 미수금과 그 이자를 탕감해줌으로써 망결계와 군계에서 넘어온 재정이 모두 소진되고 말았다.<sup>36)</sup> 이러한 사실은 두 계의 民庫錢이 채 10년도 되기 전에 모두 고갈[逋欠]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래 망결계 전유사 魏汶祚 사례는 고리의 식리활동이 포함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1864년 분배금 1냥 → 1865년 1냥 → 1866년 1.4냥(분배금 1냥 + 전해 이자 0.4냥) → 1867년 1.96냥(1.4 + 0.56) → 1868년 2.72냥(1.96 + 0.76) → 1869년 3.8냥(2.72 + 0.76)

위에서 보듯이 5년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864년 분배금의 약 4배에 달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계는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전액 탕감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870년 장흥부는 방촌동 陳田 5부 6속의 전결세 6냥을 망결계 기금에 보태도록 했던 것 같다.<sup>37)</sup>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방촌동은 1869년 기존의 망결계를 동계에 통합시켜 버렸다. 그래서 방촌동은 1870년 망결계를 새로 만들고 식리활동을 해 갔다(〈표 5〉 참조). 이 망결계 운영 또한 기존의 민고 관련 것처럼 순조롭지 못했다. 이자를 전혀 걷지 않은 해가 2번 있었다. 1871년에는 아예 망결전을 분배하지 않았고, 1874년에는 그 전해 분배금에 대한 이자를 걷지 않았다.<sup>38)</sup> 이후에도 이자를 걷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1877년 방촌동은 망결계를 동계에 통합시켜 버렸다. 동계는 망결계를 흡수하면서 사망한 전유사의 분배금과 이자 전액, 그리고 생존한 전유사의 이자 절반을 탕감해 주었다.<sup>39)</sup>

---

다고 여겨진다. 1869년 동계와 군계의 분배금과 그 이자를 합하면 87.21냥이 되어야 하나, 1870년 동계는 62.22냥만 수봉했다.

36) 『大同稷』 「洞契」 庚午(1870), 12月 15日 11兩8錢3分 數員處未捧許除, 辛未(1871) 12月 15日 12兩7錢6分 各員減下, 壬申(1872) 12月 15日 無後蕩. '無後蕩'은 1871년 전장기 말미에 적혀있으나, 1871년 분배금과 그 이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1872년 강신 때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37) 『大同稷』 「亡結契」 壬申(1871) 12月 15日, 春丹 亡結錢 5卜1束 6兩 2兩4錢 并本利 8兩4錢. 방촌동은 陳田 5卜1束의 전결稅(亡結稅)를 春丹이라는 戶名으로 납부했음을 알 수 있다.

38) 『大同稷』 「亡結契」 甲戌(1874) 12月 15日, 已上 本錢 9兩2錢1分 請則革罷利錢勿施.

39) 『大同稷』 「洞契」 丁丑(1877) 12月 15日, 2兩6錢5分 申石奉死亡蕩下 …… 3兩4錢6分 半年利條蕩下.

자미동과 방촌동 사례는 19세기 지방재정에 逋欠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민고 운영 방식, 즉 식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조선후기에는 1년 이자로 원금의 40~50%를 수취하는 식리를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웠다. 농업생산성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는 ‘3년꼴로 작은 가뭄이 들고, 10년에 한 번 큰 가뭄이 든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가뭄이 자주 들었다. 19세기 토지 생산성은 경상도 진주 마진동 재령 이씨가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그림 1〉 참조).<sup>40)</sup> 흉년이 든 해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농민들에게 민고전의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흉년이 연속되면 이자에 이자가 쌓여 깊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풍년이 들어도 이자를 갚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겨우 밥 먹고 사는 농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세기 자미동과 방촌동 사례에서 저간의 사정을 읽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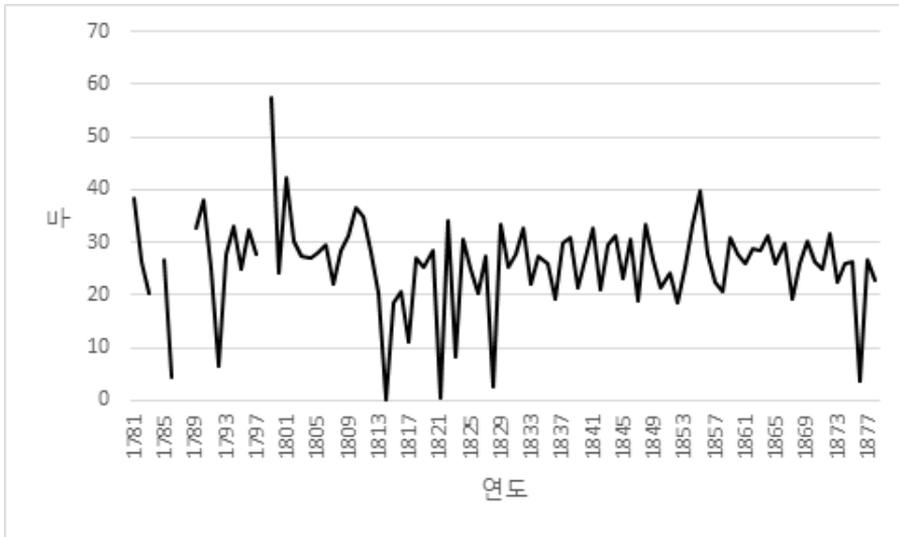
활발한 인구이동도 장기간에 걸친 식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호적에 실린 호는 대체로 3년에 20% 정도 물갈이 되다가 큰 흉년이 들면 3년에 40% 정도 바뀐다.<sup>41)</sup> 그 결과 장기간 한 곳에 거주하는 가계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컨대 경상도 단성현 법률야면 1717년 호적에 368호가 등재되었는데, 그 후손이 1789년 호적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77호(21%)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1825년 법률야면 호적에 567호가 실렸는데, 그 후손이 1882년 호적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59호(10%)에 불과하다.<sup>42)</sup> 대구부 서상면 1681년 호적에 등재된 807호는 731가계로 구성되었는데, 그 후손이 1795년 호적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163가계(22%)에 지나지 않는다.<sup>43)</sup> 마을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앞에서 살펴본 자미동 김순복 처럼 분배받은 민고전을 가지고 간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40) 재령 이씨가 농업경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 참조. 김건태 「18~19세기 마진 이씨의 농업경영」, 『진주 마진마을과 재령이씨가 고문서』 2022년 11월 11일, 장서각 학술대회.

41)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42) 이영훈·조영준, 「18~19세기 농가의 가계계승의 추이」, 『경제사학』 39, 경제사학회, 2005.

43) 이우진, 「18세기 대구 호적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한국사론』 57, 서울대 국사학회, 2011.



〈그림 1〉 1781~1878년 진주 마진동 재령 이씨 가작답 1두락의 벼 생산량

짧은 평균수명도 장기간에 걸친 식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선 후기는 다산다사의 시기였던 만큼 결혼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많았다. 행장류 자료에 따르면 조선시대 양반 여성 1인이 평균 5.09명을 출산했는데, 이들 가운데 결혼하기 이전에 사망한 자식이 2.55명, 성년까지 생존한 사람은 2.54명이다. 즉 양반 신생아의 절반 정도가 결혼 이전에 사망한 것이다.<sup>44)</sup> 조선후기에는 결혼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기대여명(estimated life expectancy)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한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네 개 가문의 족보에 따르면 1700~1899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의 기대여명은 23세, 이 시기에 태어난 양반 남성의 기대여명은 25세, 이 시기에 태어나서 20세까지 성장한 양반 남성의 기대여명은 32.44세였다.<sup>45)</sup> 그리고 안동권씨족보에 따르면 1920년 이전에 출생하여 결혼까지 살아남은 양반 남성들의 기대여명은 34.8세였다.<sup>46)</sup>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람 가운데는 방촌동 신석봉처럼 민고전을 분배받은

44) 김두얼,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변동」, 『경제사학』 52, 경제사학회, 2012.

45)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물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2(1), 한국인구학회, 2009.

46) Byung-giu Son and Sangkuk Lee, Long-Term Patterns of Seasonality of Mortality in Korea form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방촌동은 그가 분배받은 망결전을 탕감해 주었다.<sup>47)</sup>

#### IV. 민고와 전세제도의 친연성

정부는 왜 민고전을 지속적으로 분배했을까? 다시 말해 국가운영에 필요한 돈이나 곡물을 그냥 수취하지 않고, 왜 돈[민고]이나 곡물[환곡]을 먼저 나누어주고 그 이자를 받으려 했을까? 이러한 의문은 결부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민고전 분배액의 산정 근거는 戶數였는데, 고대 결부수 또한 호수를 근거로 산출되었다. 신라장적이 실상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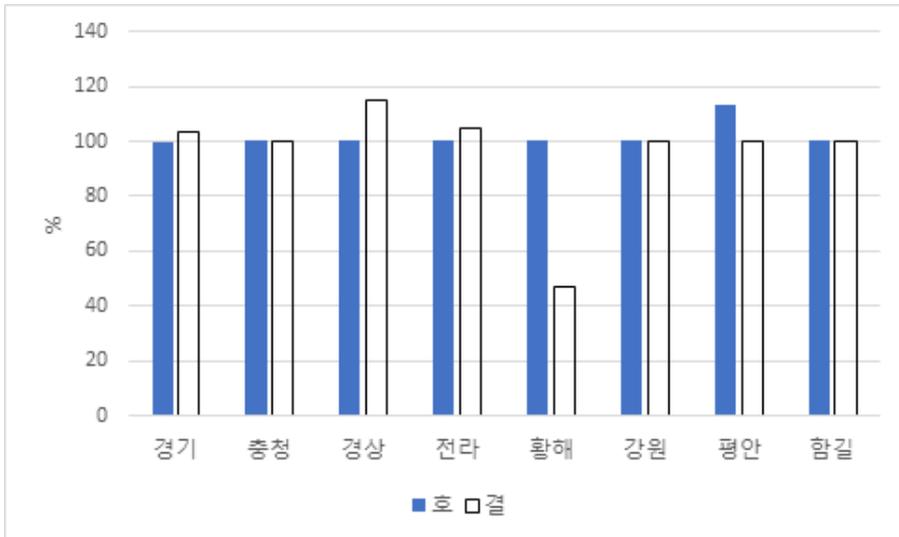
신라장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독특한 자료인데, 그 중에서도 마을별로 孔烟數, 男丁數, 전답 결부수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답 결부수는 6.9(공연의 기본값) × 공연수 + 3(남정의 기본값) × 남정수다. 예컨대, 沙害漸村을 보면 공연 11, 남정 27명[노와 촌주 제외], 전답 156.9결{75.9[6.9 × 11(공연수)] + 71[3 × 27(남정수)]}이다.<sup>48)</sup> 공연수, 남정수, 전답 결부수 사이에 질서 정연한 상관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이들 3항목을 인위적으로 조절했음을 의미한다. 우연히 그러한 상관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사례수가 너무 많다. 공연수, 남정수, 전답 결부수 가운데 기본이 되는 항목은 공연과 남정이다. 다시 말해 공연수와 남정수를 알면 전답 결부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전답 결부수를 토대로 공연수와 남정수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신라장적 결부수는 공연과 남정을 토대로 조절되었음을 의미한다.

호수와 결부수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도 확인된다. 『세종실록지리지』는 호수와 墾田 결수를 군현 별로 정리하기도 하고, 도

the Seven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amily History 37(3), Sage Publication Inc, 2012.

47) 『大同禊』 「洞契」 丁丑(1877) 12月 15日, 2兩6錢5分 申石奉死亡蕩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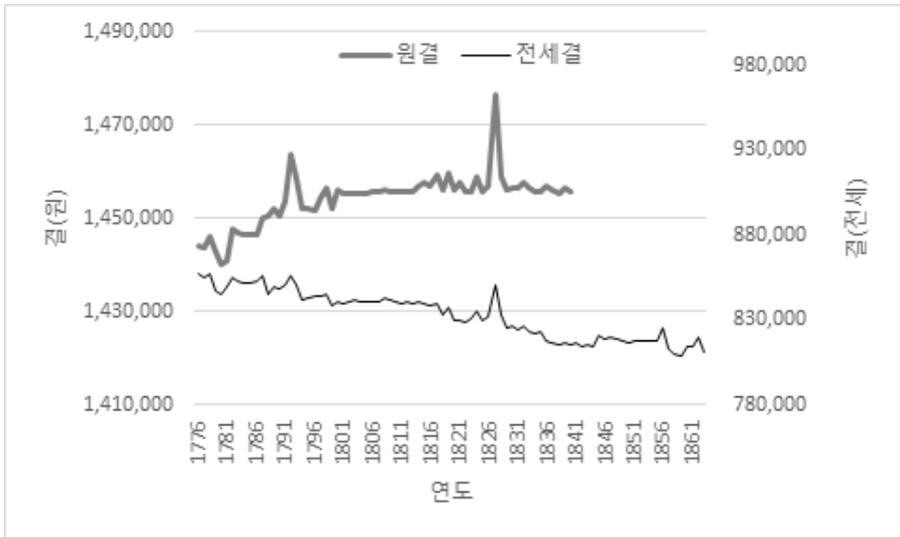
48) 공연과 남정의 기본값에 대해서는 이인재, 「新羅統一期 土地制度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그림 2〉 『세종실록지리지』 호수와 결수의 읍총 대비 도총

별로 파악하기도 했다. 예컨대, 경기도를 살펴보면 광주목 호수 1,436호 간전 16,269결처럼 41개 군현(한성부 제외)에 대해 각각 정리하고, 경기도 20,882호 200,347결처럼 도 단위[도총]로도 파악했다. 그런데 개별 군현의 합[읍총]과 도총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그림 2〉 참조). 먼저 호수를 살펴보면 평안도는 도총이 읍총에 비해 무려 13.4%나 많다. 나머지 도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치하는 사례는 전라도와 함길도 뿐이다. 다음으로 결부수를 살펴보면 호수에 비해 양자의 차이가 더욱 심하다. 양자가 일치하는 사례는 없고, 황해도는 도총이 읍총에 비해 무려 53.2%나 적고 경상도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15.2%나 많다.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 편찬한 책임을 감안하면 계산상의 단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운 차이이다.

정부는 재정정책에 맞춰 읍총을 조정하여 도총을 산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읍총 합은 197,000호 1,684,556결이고, 도총 합은 201,853호 1,625,234결이다. 그 결과 전국 8도의 호당 결수는 읍총 8.55결에서 도총 8.05결로 바뀐다. 조선초기 정부는 8결당 1호, 즉 고려시대 半丁을 부세 표준 단위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각종 재정정책은 20만호 160만결을 토대로 입안되었던 것이다.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 1차적으로는 호구조사나 양전을 할 때 읍단위 호총·결총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파악했고, 2차적으로는 군현별로 파악한 읍총을 조절하여 도총을 산정하였다고



〈그림 3〉 조선후기 전결수 현황

볼 수 있다.<sup>49)</sup>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호구와 토지 중 어느 것이 主이고 어느 것이 從인지를 알기 어렵다. 즉 호수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결수를 맞추는지, 아니면 결수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호수를 맞추는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호당 8결을 상정한 상태에서 20만 호가 주라면 결총은 자연스럽게 160만결이 되고, 160만결이 주라면 호총은 당연히 20만호가 된다.

그 해답은 조선후기 호총과 결총을 살펴보면 구해진다. 『경국대전』에는 3년마다 호구조사를 하고,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후기에 호구조사는 3년마다 이루어졌으나 중앙정부가 주도한 양전은 두 번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전국을 아우르지 못했다. 이른바 갑술(1634년)양전 때는 경기와 하삼도, 경자(1720년)양전 때는 하삼도만 대상이었다. 이같이 조선후기에는 양전이 2번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집계한, 즉 『度支田賦考』에 실린 전국 결부수는 매년 바뀐다(〈그림 3〉). 이러한 사실은 조선정부가 집계한 조선후기 결부수는 전답의 면적을 구하고 비옥도를 판정하는 양전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이 아님을

49) 『세종실록지리지』 호수와 墾田 결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 참조. 박근환, 「조선초기 현물제정 운영과 조용조 체제의 성립」,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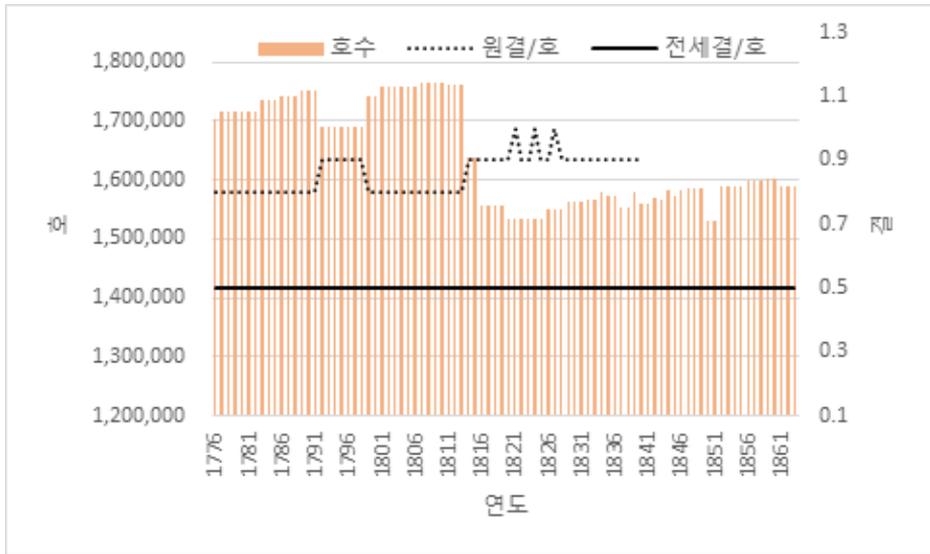
의미한다.

『탁지전부고』의 결부수는 出稅結數, 給災結數, 免稅結數, 流來雜項結數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림의 원결은 4항목 합이고, 전세결은 출세실결수와 급재결수를 합한 것이다. 먼저 원결 추이를 보면 1776~1840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소폭 증가한다. 1776년 1,444,128결, 1840년 1,455,728결이다. 특히 1792·1827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그 이듬해 다시 큰폭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추이는 앞에 소개된 진주 마진 재령이씨가 가작답 생산성 추이와 상당히 다르다. 이씨가 가작답 1두락의 94개년 평균 소출은 25.8두고, 1792년 6.6두, 1827년 27.2두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전국 결부수가 인위적으로 조절되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전세결 추이를 보면 1776~1863년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 장기적으로 꽤 감소한다. 1776년 856,703결, 1840년 811,241결이다. 급재결수 또한 1827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그 이듬해 다시 큰폭으로 감소한다. 전세결수 또한 농형을 정확하게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전결에 대한 課稅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작황실태, 즉 年分은 稍實(3/4 수확), 之次(1/2 수확), 尤甚(1/4 수확) 등 3종류였고 年分을 파악하는 단위는 면이었다. 작황 실태를 조사하는 간평서원의 보고를 토대로 수령이 급재결수를 계산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산하 각 군현의 급재결수를 종합하여 호조에 給災를 신청했다. 호조는 각 도별로 元摠과 그 해의 풍흉에 상당하는 연도의 출세실결을 비교하여 당해 연도의 출세실결수와 급재결수를 확정하여 각 도에 事目으로 반급했다. 이 때가 대체로 음력 7월~9월 경이었다. 감사는 호조에서 하달된 事目災結과 實摠外結數를 감안하여 각 군현별 급재결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sup>50)</sup>

정부가 결부수를 조절할 때 당해 연도 농형을 참고하였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가 결부수를 산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을까? 아니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산정했을까? 정부는 호적에 근거해 결부수를 산정했다(〈그림 4〉 참조). 원결수를 호수로 나눈 값(그림의 점선)이 장기간 고정된 경우가 많다. 특히 전세결수를 호수로 나눈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776~1863까지 단 한해도 예외 없이 모두 0.5결이다(그림에서 실선). 이러한 사실은 호수를 근거로 결부수를 산출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789년 호수는 1788년

50) 이철성, 「18세기 전세 비총제의 실시와 그 성격」, 『한국사연구』 81, 한국사연구회, 1993.



〈그림 4〉 조선후기 호수와 결수 관계

가을에 확정되고, 1789~1791년 부세행정에 활용된다. 그런데 전세결은 당해 연도 가을, 즉 1789·1790·1791년 가을에 결정된다. 다시 말해 1788년에는 1789~1791년 농형을 알 수 없고, 1789~1791년 가을에는 해당연도 호수를 알 수 있다. 이같이 호수를 토대로 전결수를 산출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양전을 20년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같이 조선후기 호수와 결부수의 관련성은 결부제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해준다. 즉 고대부터 내려온 결부제는 입안의 이념적 근거를 同生産量에 둔 것이 아니라 同賦稅量에 두었다. 따라서 조선후기 갑술·경자양전, 대한제국기 광무양전 때는 전답의 면적과 비옥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결부수를 산출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 총부세량 차이, 소유자의 신분, 전결세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면적과 비옥도를 조절하였다.<sup>51)</sup> 그 결과 1결의 생산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했지만 1결의 부세량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했다.<sup>52)</sup>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결부수를 산정할 때 당해 연도 생산량[비옥도,

51) 김진태,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2018; 김소라,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52) 김진태, 「결부제의 사적 추이」,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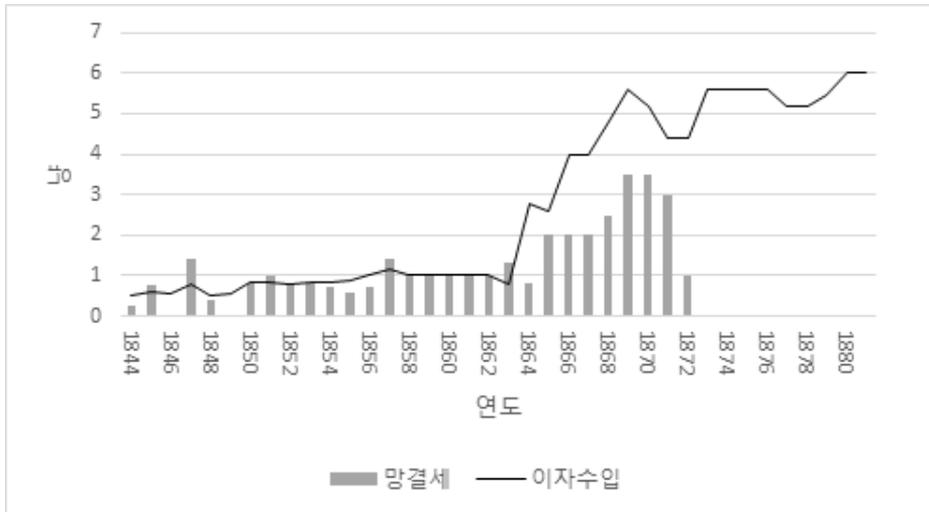
풍흉 등]뿐만 아니라 사용자[소유자]도 고려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결부제가 처음 입안된 고대사회에는 전결세 수취의 이념적 근거를 왕토사상에 두었다. 조선시대에도 온 나라의 땅이 왕의 것이라는 왕토사상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명을 대행하는 수령을 다른 말로 地主, 곧 땅 주인이라고 불렀다. 그에 비해 전답의 실제 소유주는 전·답주라 했다. 나아가 과전법도 이념적 근거를 왕토사상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왕[정부]을 대신하여 전세를 수취하는 과전 수급자를 田主, 과전의 실제 소유주를 佃客이라 칭했다. 그런데 전국토가 왕의 땅이라는 관념이 실효성을 발휘했다고 해서 개별 전·답주의 농지를 국왕이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전·답주들은 자신의 땅에 대해 오늘날 지주들의 소유권과 거의 유사한 권리를 행사했다.

조선후기에는 전국토가 왕토였기에 전결세는 이념상 왕의 토지를 경작한 데 대한 사용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19세기에는 경작자가 전결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즉 自耕地에서는 경작자가 곧 소유자였기에 경작자가 전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병작지에서 경작자, 즉 借地人[作人]이 전결세를 납부하는 것은 오늘날 눈으로 보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전결세가 왕토의 사용료였기 때문에 병작지에서 작인이 전결세를 납부하는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전결세가 왕토의 사용료였기 때문에 왕토를 경작하는 사람 수, 즉 戶數를 알면 그들이 납부해야 되는 전세량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선후기에는 오랫동안 양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에서 땅을 내어주고 그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은 민고전을 분배하고 그 이자(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과 형식논리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왕토를 경작하여 수입을 거둔 땅, 즉 출세실결에서는 전결세[사용료]를 수취하면 된다. 그런데 재해가 들어 수입이 없는 급재결[陳田]에서는 전결세를 거둘 명분이 없다. 다시 말해 수입이 없는 진전에서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세를 거두려면 농민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나누어준 다음 그것의 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 나누어준 그 무엇이 앞서 살펴본 亡結錢이고, 그 이자가 바로 망결세다.

장흥부 모산동 사례를 통해 망결세 납부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보았듯이 장흥부는 각 마을의 결세 납부를 일부 유예시켜주고 그 돈으로 망결계를 결성하도록 유도하였다. 모산동 또한 1844년 결세전 1냥을 기금으로 망결계를 창설하였다가<sup>53)</sup> 모산동은 이 기금을 굴려 그 이자로 망결세도 납부하고, 계전에도 보탬다



〈그림 5〉 1844~1881년 전라도 장흥부 모산동 망결계 운영 현황

〈〈그림 5〉 참조〉. 시간이 흘러 망결계의 분배금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익도 더욱 늘어났다. 망결계 전장기[회계장장부]를 보면 망결계가 순조롭게 운영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모산동은 1873년부터 망결계에서 망결전을 직접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망결계 수입 일부를 洞用으로 이전한 다음 동중에서 망결세를 납부했다.<sup>54)</sup> 그러다가 1881년에는 망결계를 동계에 통합시켜 버렸다.<sup>55)</sup> 장부에서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장흥지역 각종 계는 전장기[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문제점을 감추려고 애썼는데,<sup>56)</sup> 모산동 망결계 또한 그러했던 것 같다.

이렇듯 亡結田[陳田]에 부과하는 망결세는 亡結錢의 사용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각종 민고 관련 부세는 민고전의 사용료(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민고전만이 아니다. 가을에 거두는 환곡도 봄에 나누어준 원곡의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같이 조선시대 호에 부과되는 민고전과 환곡, 그리고 토지에 부과되는 전결세는

53) 『亡結契傳掌記』 甲辰(1844) 二月 日, 月今所耕防錢 一兩.

54) 김건태, 앞의 2021 논문.

55) 김건태,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19.

56) 김건태, 「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하나같이 왕의 물건을 이용한 사람들이 내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부세를 수취하려면, 그러기에 앞서 백성이 사용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을 먼저 나누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조선후기에는 잡세 부과와 수취에 관련된 조직과 재원을 民庫라 했다. 조선후기 농민들이 부담했던 잡세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명목이 다양했고 그 총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부세 정책의 특성 때문에 빚어졌다. 18~19세기 동안 전결세 수입이 적지 않게 감소했고, 수취한 군포의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고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

지방 군현은 계를 활용해 민고를 운영했다. 군현에서 먼저 화포계, 망결계 등과 같이 개별 민고 이름을 딴 계를 설립하고, 戶數를 참작하여 계전[민고전]을 예하의 면에 분배하여 면 단위 계를 창설하도록 했다. 그리고 개별 면은 다시 그 계전을 예하의 동에 분배하고 동 단위 계를 창설하도록 했다. 그러면 동은 매년 분배금[원금]의 30~6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세명목으로 면에 납부하고, 면은 그 돈을 모아 군현에 상납했다.

민고는 高利의 식리활동에 의거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웠다. 크고 작은 가뭄이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흉년이 든 해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는 농민들에게 민고전의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흉년이 연속되면 이자에 이자가 쌓여 갚아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풍년이 들어도 이자를 갚기 쉽지 않다. 활발한 인구이동도 장기간에 걸친 식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고전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야반도주하기가 일쑤였다. 짧은 평균수명도 장기간에 걸친 식리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고전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 민고가 오랫동안 존속하게 되면 이자 수입이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군현은 그러한 민고에 기금을 마련하여 계전을 보충해 주었다. 이렇게 되면 문서상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기금이 모두 원금으로 잡혀 있으나 실제로는 두 번째 기금에 대한 이자만 받게 되고, 첫 번째 기금은 逋欠이 되는 것이다.

민고만 재화를 분배하고 부세명목으로 그 이자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조선후기 환곡 운영원리도 식리다. 그런데 전근대·근대 국가를 막론하고 부세제도 운영원리로 식리를 택한 나라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예컨대 오늘날 국가는 개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소득을 올리도록 재화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방적으로 수취한다. 즉 재산세와 소득세는 국가가 분배한 재화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재화를 나누어준 다음 이자를 부세명목으로 수취하는 제도는 왕토사상과 관련 있었다. 조선후기까지도 여전히 땅 주인은 왕이고, 인민은 그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왕토사상이 위력을 떨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전결세는 왕의 토지를 경작한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전결세를 수취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양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민고와 환곡처럼 사용[경작]하는 사람[戶]에게 전결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즉 호수를 파악하면 결부수는 자연스럽게 계산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후기 호에 부과되는 세금[민고, 환곡]과 농지에 부과되는 세금[전결세]은 모두 왕의 물건을 활용한 사람들이 내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시대에는 戶稅와 田結稅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화를 미리 나누어주어야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건태, 『대한제국의 양전』, 경인문화사, 2018
- \_\_\_\_\_,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김덕진, 『조선후기 경제사연구』, 선인, 2002
-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 연구』, 국학자료원, 1999
-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_\_\_\_\_, 「19세기 회계자료에 담긴 實像과 虛像」,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 \_\_\_\_\_, 「결부제의 사적 추이」, 『대동문화연구』 108,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9
- \_\_\_\_\_,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19
- \_\_\_\_\_, 「19세기 마을 공동납과 마을자치」, 『한국문화』 95,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21.
- \_\_\_\_\_, 「18~19세기 마진 이씨가 농업경영」, 『진주 마진마을과 재령이씨가 고문서』(2022년 11월 11일, 장서각 학술대회 발표집)
- 김두열, 「행장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양반의 출산과 인구변동」, 『경제사학』 52, 경제사학회, 2012
- 김소라, 「양안의 재해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세 정책의 특징」,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 김용섭, 「조선후기의 민고와 민고전」, 『동방학지』 23·24,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0
- 김현구, 「18·9세기 거제부의 해세운영과 민고」, 『부대사학』 19, 부산대 사학과, 2007
- 박근환, 「조선초기 현물재정 운영과 조용조 체제의 성립」,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송양섭, 「18~19세기 공주목의 재정구조와 민역청의 운영」, 『동방학지』 154,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1
- 심재우,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향약·계 이해와 향촌자치 구상」, 『조선시대의 계와 향촌사회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회의 발표집, 2022. 9. 30)
- 이영훈·조영준, 「18~19세기 농가의 가계계승의 추이」, 『경제사학』 39, 경제사학회, 2005
- 이유진, 「18세기 대구 호적을 통하여 본 도시지역의 특징」, 『한국사론』 57, 서울대 국사학과, 2011
- 이인재, 「新羅統一期 土地制度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철성, 「18세기 전세 비총제의 실시와 그 성격」, 『한국사연구』 81, 한국사연구회, 1993
- 정승화, 「조선후기 균역청 재정 운영의 추이와 성격」,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차명수, 「조선후기의 출산력, 사망력 및 인구증가: 네 족보에 나타난 1700~1899년간 생몰 기록을 이용한 연구」, 『한국인구학』 32(1), 한국인구학회, 2009

Byung-giu Son and Sangkuk Lee, Long-Term Patterns of Seasonality of Mortality in Korea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Journal of Family History* 37(3), Sage Publication Inc, 2012

## Mingo Gye and Thought of the Royal Domain

Kim, Kuen-ta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organiz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related to the imposition and receipt of miscellaneous taxes were called Mingo. Local countries and prefectures operated Mingo by using Gye. Countries and prefectures first established Gye named after individual Mingo, such as Hwapo-gye and Manggyeol-gye, and have Gyejeon[Mingo-jun] be distributed to the myeons under the subordinate to create a Gye with a myeon unit in consideration of Mingo. Then, the dong pays 30 to 60% of the annual distribution [principal] interest to the myeons in the name of the tax, and the Myeon collects the money and pays it back to the countries and prefectures.

Mingo was difficult to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it was operated based on usury activities with high-interests. Because there were frequent long-term and short-term droughts. It is difficult to even think of receiving interest from Mingo-jun from farmers who barely manage to stay alive with the aid of herb-roots and tree-barks in the year of famine. Active population movement also acted as a factor that made long-drawn-out usury activities difficult. People who were given Mingo-jun often do a moonlight flit. The short average lifespan also acted as a factor that made long-drawn-out usury activities difficult. Not a few people who received Mingo-jun died suddenly. For this reason, large-scale misuse or misappropriation occurred frequently at the village level.

Mingo was not the only one that distributed goods and received interest under the name of taxation. The operating principles of Hwan'gok(Grain Lo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re also usury. The system of receiving interest under the name of taxation after distributing goods was related to the thought of the royal domain. Land tax was a usage fee paid for cultivating the king's land, so there was no need Yangjun(land register based on land survey) to pay a huge amount of money. Just like Mingo and Hwan'gok(Grain Loan), they just need to impose a tax on the people who use [cultivate]. In other words, if the number of households is identified, the number of Kyolbu is calculated naturally.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all of the taxes[Mingo, Hwan'gok(Grain Loan)] levied

on the household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tax[land tax] levied on farmland can be considered a fee for use, which is paid by those who used the king's goods. In other words, in the Joseon Dynasty, in order to achieve taxes levied on the households and lands, goods that the people could use had to be distributed in advance.

Key Words : Mingo, Gye, Usury, Misappropriation, Thought of the Royal Domain